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447호(號) 1931(昭和 6)년 10월 31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38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1(昭和 6)년 11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10월 3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보통등급표(貨物普通等級表) 보통품(普通品)의 부문[部]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(16) 어개류(魚介類)의 부문[部] 「정어리[鰮]。꽁치[秋刀魚]。고등어[鯖]。청어[鰊]。대구[鱈]。가자미[鰈]。상어[鮫]。갈치[大刀魚]。명태[明太魚]。조기[石首魚]。민어[鮸]。도루묵[鰰]。가오리[鱚]。회잔어[鰌]。

선어[鮮: 소금에 살짝 절인 것[一鹽]을 포함[包含]함)	5	9	18	15	
소금에 절인[鹽] 것	5	9	26	21	
말린[乾] 것(건어물[乾魚物] 절편[切片을 포함[包含]함)	5	9	15	12	
기 타(其他)	5	9	118	15	」으로 개정(改正)함

(48) 고구마[甘藷] 및 감자[馬鈴薯]의 부문[部] 생고구마[甘藷生] 및 감자[馬鈴薯]의 운임계산(運賃計算) 최저톤수(最低瓲數) 표준화차(標準貨車)에 대(對)한 것 「20」을 「16」으로 개정(改)함.

(79) 고무류(gomme類) 및 그 제품(製品)의 부문[部] 고무(생[生] 및 재제[再製]한 것)의 운임계산(運賃計算) 최저톤수(最低瓲數) 표준화차(標準貨車)에 대(對)한 것 「30」을 「26」으로, 소형화차(小型貨車)에 대(對)한 것 「30」을 「21」로 개정(改正)함.

별표(別表) 화물특별급표(貨物特別級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(16) 어개류(魚介類)의 부문[部] 「정어리[鰮]。꽁치[秋刀魚]。고등어[鯖]。청어[鰊]。대구[鱈]。가자미[鰈]。상어[鮫]。갈치[大刀魚]。명태[明太魚]。조기[石首魚]。민어[鮸]。도루묵[鰰]。가오리[鱚]。회잔어[鰌]。

선어[鮮: 소금에 살짝 절인 것[一鹽]을 포함[包含]함)	15	24	
소금에 절인[鹽] 것	15	24	
말린[乾] 것(건어물[乾魚物] 절편[切片을 포함[包含]함)	15	23	」으로 개정(改正)함